

재류기간이 3개월이상 ~ 1년미만이 되는 분은 조심하십시오 !

○ 국민건강보험 및 후기고령자의료제도 (만75세이상 대상)에 가입하게 되는 외국분께

2012년7월9일부터 외국인등록제도가 폐지되어 외국분들도 일본인과 같이 주민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주민표를 만들게 될 다음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및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관해서도 적용대상이 해당됩니다.

- 법에 따라 일본에 중기, 장기재류하는 분
- 특별영주권을 가진 분
- 일시비호를 위해 상륙허가를 받은 분
- 가제류(즉 일시제류)허가를 받은 분
- 출생을 인해 일본에 재류하게 된 분
- 일본국적 상실에 인해 일본에 재류하게 된 분

(기본적으로 관광 등으로 단기재류하는 분을 제외하여, 법에 따라 3개월 이상 재류하는 외국분이 대상입니다.)

생활보호를 받고 있거나 이미 회사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을 제외하여, 만75세 이하인 분은 국민건강보험, 만75세 이상이 되는 분은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가입해야 하게됩니다.

또 주민표를 작성하지 않는 외국분이래도 아래의 “재류자격”을 소유하고 3개월 넘게 일본에 재류하는 것을 확인 된 분은 국민건강보험 및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 흥행
- 기능실습
- 가족재류
- 특정활동

○가입수속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은 자동적으로 가입 되지 않습니다. 각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자치체의 접수창구에서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 만75세 생일을 맞아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가입될 경우, 따로 가입신청 할 필요 없습니다. 단, 만65세이상 74세미만으로 일정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가입할 경우이나 위의 ★ 가 해당되는 분은 따로 가입신청이 필요합니다.

별써 국민건강보험 및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새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단, 주소가 변경되거나 재류자격이 달라진 경우는 그때 마다 신청하도록 해주십시오.

신청수속 등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는 자치체에 문의하도록 해 주십시오.